

# 2019 제도변경 사항

2019년 1월

- 목차 -

## I. 주요 변경사항

1. 복지제도
2. 보수 및 휴직제도
3. 임금피크 및 희망퇴직

# I . 2019년 바뀐 제도

## 1. 복지제도

구분	변경 내용
<p><b>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대상 : 직원의 대학 취학자녀에 대해 장학금 지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녀 동시신청 최대 3인까지(대상자녀 지정 후 중도변경 가능)</li> </ul> </li> <li>• 지원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납입영수증(납입증명서)의 ‘입학금’, ‘수업료(등록금)’ 로 표기된 금액의 75%(해외대학의 경우 연세대학 유사계열 준용)</li> <li>- 직원 1인 기준 16학기 내, 자녀 1인당 최대 8학기</li> <li>✓ ‘19년 1학기 발생분부터 신청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제도 폐지( ‘19.1.1~)</p>
<p><b>의료비 지원 개선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대상(기존과 동일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인 및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와 만26세 이하 자녀 (단,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는 지원연령 상한 미적용)</li> </ul> </li> <li>• 지원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급여성 본인부담금(가족포함) 월 2만원 초과시 그 초과액과</li> <li>- 비급여성 본인부담금(가족포함) 중 MRI/CT/초음파 진단료의 100% 지원 (단, 단체보험에서 지급받은 MRI진단료를 제외한 차액만 지급)</li> </ul> </li> </ul> <p>✓ 임원의료로 선택한 직원은 MRI 30% 지원(70%는 보험사 청구)          ✓ ‘19.1.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(2019.1.1일 이전 진료분은 30% 지원)</p>

구분	변경 내용
카페테리아 복지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노사공동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시행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Kick-off : 2018. 12.18 분당 16층 회의실</li><li>- 위원회 구성 : 노사 각 5명 (3개분과 운용 : 재원분과, 벤치마킹분과, 의견수렴분과)</li><li>- 카페테리아 복지 국내외 우수기업 사례 벤치마킹</li><li>- 세대·계층별 복지수혜액 다각적 분석</li><li>- 방문인터뷰 광화문East(12.19), On·off Line 설문조사, 토론회</li></ul></li></ul>

# I . 2019년 바뀐 제도

## 2. 보수 및 휴직제도

구분	변경 내용
<p><b>Pay-Band 개선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지 : 협약인상 결과와 Pay-Band 상하한 동시 연동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매년 협약인상을 만큼 Pay-Band 상하한금액이 늘어남.</li> </ul> </li> <li>• 주요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페이밴드 상한을 당해년도 임금협약 결과와 연동하여 차년도 1.1일자 매년 조정</li> <li>- 조정된 페이밴드 하한과 상한의 중간값으로 분위 재설정</li> </ul> </li> <li>• 시행일 : 2019년 1.1일자(2018년 협약인상을 반영)</li> </ul>
<p><b>청원 휴직제도 개선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지 : 가정의 안정 도모와 애사심 증진</li> <li>• 주요내용 : 배우자의 해외파견으로 동행 필요시 무급 휴직 신청가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입사 후 5년이상<sup>실근속년수</sup>근무자 限 &lt;배우자 경쟁사 직원일 경우 승인 제한&gt;</li> <li>- 휴직기간/횟수 : 배우자의 파견 기간 이내(최대5년)/근무 중 1회 限</li> <li>- 승인절차 : 대상자 신청 -&gt; 각 부서 및 인재경영실 최종 검토 후 승인</li> </ul> </li> </ul>

구분	변경 내용							
<b>임금피크제 개선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임금피크 지급시점 및 지급율 변경							
	구분	기존				개선		
	연령	56세	57세	58세	59세	57세	58세	59세
지급률	90%	80%	70%	60%	90%	80%	80%	
<b>희망퇴직 기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희망퇴직금 : (월 기준급+역량급)<sup>주1)</sup> × 산정월수 × 지급율</li> <li>주1) 임금피크제 기 적용직원은 피크임금(100%) 기준</li> <li>▶ 산정월수(최대 45개월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년퇴직일 5년 이내 : 잔여월수 매 2월당 1개월</li> <li>- 정년퇴직일 5년 초과 ~ 10년 이내 : 잔여월수 매 4월당 1개월</li> <li>※ 단 잔여월수 계산시 4월미만은 1개월로 계산</li> </ul> </li> <li>▶ 지급율(%) : 100+{55-{20/45}×산정월수}</li> <li>• 비금전적 보상 : 공로패, 여행상품권, 명예사원증</li> <li>• 시기 : 분기별 시행</li> </ul>							